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758
----------	-------

발의연월일 : 2026. 10. 2.

발 의 자 : 박용갑 · 윤준병 · 어기구
이건태 · 김병주 · 정준호
남인순 · 조인철 · 백선희
서영교 · 소병훈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보조금 지급 시 고려하여야 할 기준에 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실제 국고보조사업은 농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도시지역 중 고령인구 비율이 높거나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은 지원 대상에서 사실상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시·도가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때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 수요, 보건의료 이용 여건,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 해당 여부, 재정 여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의료 수요에 부합하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

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고령인구의 비율 등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수요
2. 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이용
여건
3. 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
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
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제2조1의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
7.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비용의 보조) ①·② (생략) <u><신 설></u>	제24조(비용의 보조)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u>고령인구의 비율 등 인구구조 및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수요</u> 2. <u>지역보건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 등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이용 여건</u> 3. <u>해당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분포 및 의료취약 정도</u> 4. 「 <u>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권역책임의료기관 및 지역책임의료기관과의 연계·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성 5. 「 <u>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u> 」 제2조제1호,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및 인구감소관심지역에 해당하는

	<u>지 여부</u> <u>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u> <u>등 재정 여건</u> <u>7.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u> <u>계획의 내용</u>
--	---